

의안번호	
의 퇴 인	안철수의원
회 답 일	2026. 7. 2.
추 계 번호	26E294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,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각각에
대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2조제4항 (특별소득공제)	○ 혼인관계에 있으나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부부 각각에 대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- 무주택 세대주(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세대로 본다)에 대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2조 제4항 (특별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혼인관계에 있으나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-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세대주인 경우, 해당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이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거나,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

- 반면, 개정안은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,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각각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면서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 중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 규모와 이들이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규모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함
- 그러나 추가 소득공제 대상자 수 및 이들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세수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